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46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김문수 · 박지원 · 조계원
백승아 · 김준혁 · 이광희
황명선 · 이성윤 · 이수진
정을호 · 강경숙 · 고민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이렇게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는데,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자가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에 조기복귀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파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복무”를 “복무, 복귀 시 비위 관련 확인 및 통보 절차”로 한다.

- ④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파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제78조의4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받은 임직원의 복귀 시 비위 관련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파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제78조의4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⑤ ----- ----- ----- ----- ----- ----- -----복무, 복귀 <u>시 비위 관련 확인 및 통보 절차</u>

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차

-----.